

전임교원특별채용규정

2009.09.01.제정 2011.02.01.일부개정 2011.04.20.일부개정 2012.01.27.일부개정
 2012.07.22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 2018.07.01.일부개정 2021.05.27.일부개정
2021.06.01.일부개정

<교무팀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.)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자격) 특별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대학 특성화 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교육·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
2.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저명학자
3. 조교수(외국인) (개정 2011.2.1, 2012.7.22.)
4. 산학협력중점교수 (신설 2011.2.1.) (개정 2012.1.27.)
5.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(개정 2011.2.1.)

제 3 조 (임용절차) ① 교무처장은 단과대학(또는 독립 학부)의 특별채용이 필요한 전공분야, 선발 인원, 후보자격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특별채용지침을 소속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1.4.20, 2012.7.22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)

- ② 임용일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중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.
- ③ 특별채용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추천인 의견서 또는 학과추천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1.2.1.)
- ④ 특별채용위원회는 서류심사와 1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적임자라고 판단할 경우 총장에게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용을 추천한다. (개정 2011.2.1.)
- ④의2 「교원인사규정」 제9조제3항의 신임교원 자격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 (신설 2021.5.27.)
- ⑤ 특별채용위원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장은 최종면접을 실시한다. (신설 2011.2.1.)
- ⑥ 총장의 면접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(신설 2011.2.1.) (개정 2011.4.20, 2012.7.22.)
- ⑦ 조교수(외국인)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특별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외국인교원규정」 및 「산학협력중점교수임용규정」으로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1.2.1.)(개정 2012.1.27, 2012.7.22.)

- 제 4 조 (특별채용위원회)** ① 특별채용 임용대상자 추천을 위해 특별채용위원회를 둔다.
- ② 동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특별채용 대상자가 소속될 학과(대학, 학부)가 추천한 교원 3인과 총장이 임명한 교원(2명이내)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01., **2021.6.1.**)
- ③ 위원회는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필요에 따라서 관련 교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
제 5 조 (교원인사위원회 심의)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특별채용 후보자의 제출서류, 특별채용위원회 의견서 및 총장의 면접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한다. (개정 2011.2.1.)

제6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3조 제1항 중 부서장 변경(교학지원처장) 사항과 제4조 제2항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제1항, 제6항은 정관 제37조 제2항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